

工業所有權侵害가 技術開發 및 市場秩序에 미치는 影響

調 查 部

工業所有權侵害의 意義

有體物에 대한 所有權은 事實上的 占有가 可能한데 대하여 無體財産權인 工業所有權은 物理的으로는 存在하지 않고 觀念的인 것이므로 事實上的 占有가 不可能하고 이에 따라 工業所有權의 權利者가 알지 못하게 工業所有權의 內容을 盜用하거나 模倣하는 것이 매우 쉽다. 즉, 工業所有權의 排他性은 有體物을 客體로 하는 權利처럼 그 對象物의 性質에 根據한 것이 아니고 人爲的으로 形成된 것이어서 完全하지 않으며 따라서 侵害받기 쉬운 特徵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現行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및 商標法은 直接侵害뿐만 아니라 間接侵害에 대하여도 規定하여 權利者의 保護에 踈跌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및 商標權에 의한 獨占排他的인 權利를 侵害하는 것 외에 權利로서 設定登錄 받지 않았는데도 不拘하고 特許 또는 登錄을 받은 것으로 表示하거나,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特許 또는 登錄을 받는 行爲도 이를 廣義의 工業所有權侵害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工業所有權侵害의 類型

直接 侵害

特許法 第45條는 特許權의 內容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特許權者는 物件의 發明에 있어서는 業으로서 그 物件을 生産·使用·販賣·輸入 또는 擴布할 權利를 獨占하고 그 方法의 發明에 있어서는 業으로서 그 方法을 使用하거나 그 方法에 의하여 生産된 物件의 使用·販賣·輸入 또는 擴布하는 權利를 獨占한다.

② 新規의 同一物은 同一한 方法에 의하여 生産된 것으로 推定한다.

實用新案法 第11條는 “實用新案權者는 그 登錄實用新案의 物件을 業으로 生産·使用·販賣·輸入 또는 擴布할 權利를 獨占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意匠法 第19條는 “意匠權者는 登錄意匠으로 된 物品을 業으로서 生産·使用·販賣·輸入 또는 擴布할 權利를 獨占한다”고 規定하여 特許法上의 物件의 發明과 同一하게 規定하고 있다.

商標法에 있어서는 그 第2條 第5項에서 商標의 使用이라 함은 다음에 揭記하는 行爲를 말한다.

① 商品 또는 商品의 包裝에 商標를 붙이는 行爲

② 商品 또는 商品의 包裝에 商標를 붙인 것을 讓渡 또는 引渡하거나 그 目的으로 展示·輸出 또는 輸入하는 行爲

③ 商品에 관한 廣告, 定價表, 去來書類, 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붙이고 展示는 頒布하는 行爲”라고 規定하는 한편,

第23條에는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대하여 그 登錄商標를 使用할 權利를 獨占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工業所有權의 直接侵害라 함은 一般的으로 模倣 또는 盜用이라고 일컫는 것을 의미하며, 法律上 正當한 權限이나 理由없이 他人의 發明特許,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을 實施하거나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한 商品에 使用하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여기서 實施 또는 使用이라고 함은 위에서 말한 各種 權利의 內容에 該當되는 行爲를 말하는 것이다.

工業所有權中 特許權과 實用新案權에 있어서는 登錄設定된 後 뿐만 아니라 出願公告에 따라 생긴 假保護權에 대한 侵害도 認定되고 있다.

間接 侵害

工業所有權은 觀念的으로 存在하는 것이므로 權利者에 의한 事實上的 占有가 不可能하여 他人의 侵害를 받기 쉽다.

이러한 點을 勘案하여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및 商標法은 直接侵害外에 소위 “間接侵害”에 대하여도 規定하고 民事的 責任은 물론 刑事處罰도 課하고 있는데 工業所有權은 이러한 規定에 의하여 侵害에 대한 脆弱點이 어느정도 補完된다고 할 수 있다.

特許法 第64條는, “다음 各號의 行爲는 당해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것으로 본다.

① 特許가 物件의 發明에 대한 것일 때에는 그 物件의 生産에만 使用하는 物件을 業으로 生産·販賣·使用·輸入 또는 擴布하는 行爲

② 特許가 方法의 發明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方法의 實施에만 使用하는 物件을 業으로 生産·販賣·輸入 또는 擴布하는 行爲”

實用新案法 第12條(侵害로 보는 行爲)가 “登錄實用新案에 關聯한 物件의 生産에만 使用하는 物件을 業으로하여 生産·使用·販賣·輸入 또는 擴布하는 行爲는 當該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것으로 본다”고 規定하고, 意匠法 第31條(侵害로 보는 行爲)가 “登錄意匠에 關聯한 物品의 生産에만 使用하는 物品을 業으로서 生産·使用·販賣·輸入 또는 擴布하는 行爲는 當該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것

으로 본다”고 規定한 것은 모두 特許法의 規定과 趣旨를 같이 하는 것이다.

商標法 第36條에 商標權侵害로 본다고 規定된 다음 事項中 ①의 部分은 直接侵害에 該當되고 ② 및 ③이 間接侵害에 該當된다.

①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行爲

②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할 目的 또는 使用하게할 目的으로 交付 또는 販賣하거나 偽造·模造 또는 所持한 行爲

③ 他人의 登錄商標를 偽造 또는 模造할 目的이나 偽造 또는 模造케 할 目的으로 그 用具를 製作交付販賣 또는 所持한 行爲

特許權, 實用新案權의 경우에는 그 出願이 出願公告되면 假保護權에 의한 保護를 받게 되는데 假保護權에 대한 間接侵害도 直接侵害와 같이 取扱된다.

冒認 特許

發明者도 아니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하지도 않은 者가 特許出願을 한다면 이는 他人의 發明을 自己의 發明이라고 詐稱하는 것으로서 眞正한 發明者를 해치는 行爲이며 나아가 特許를 받았다면 그것이 無効事由에 該當하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로서 眞正한 發明者가 特許를 받는데 支障을 받으므로 큰 損害를 입는 까닭에 一種의 特許侵害로 볼 수 있고, 實用新案과 意匠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虛偽 表示

特許 또는 登錄된 사실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物件 또는 카타로그등에 特許 또는 登錄된 것으로 表示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것을 虛偽表示라고 하는데 虛偽로 표시된 權利가 他人의 權利로서 실제로 存在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直接侵害나 間接侵害에 該當될 것이고, 實際로 存在하지도 않는 權利를 存在하는 것처럼 表示한 경우에는 刑事上의 罰則이 適用되는 外에 一般需要者를 欺瞞하는 것이 된다.

工業所有權侵害가 技術開發에 미치는 影響

技術開發意慾의 減退

工業所有權制度는 創作技術을 公開하여 産業과 技術의 發達에 寄與한 創作者를 保護하지 않으면 그 意義가 없는 것이거나 自己의 權利가 侵害되어 權利를 保護받지 못하게 된다면 發明者나 考案者는 새로운 技術의 創作을 위해 苦生을 甘受하려고 한 보람을 잃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研究開發意慾이 減退될 것은 豫想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工業所有權侵害에 대한 民事的·刑事的 制裁措置를 講究하는 길이 열려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時間과 經費 그리고 複雜한 節次를 覺悟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侵害를 받은 사람이 充分한 補償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으며 法的인 解決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存續期間의 滿了 등으로 인해 自己의 權利를 充分히 行使한 機會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技術開發投資의 減少

工業所有權의 最大의 特徵은 그 權利를 全國에 걸쳐 獨占排他的으로 行使할 수 있다는데 있고 이에 附隨하여 經濟的인 利益을 圖謀하려고 하는 것이 工業所有權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所望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努力과 經費, 그리고 時間을 들여 開發한 創作技術에 附與된 工業所有權이 他人에 의해 侵害되어 獨占權의 行使가 如意치 못하고 엉뚱한 第3者가 별다른 投資도 없이 덩달아서 利益을 보게 된다면 企業家는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에 힘을 必要를 느끼지 않을 것이며 技術開發보다는 模倣이나 盜用에 눈을 돌리므로써 技術의 進歩와 産業發達은 停滯되고 말 것이다.

工業所有權侵害가 市場秩序에 미치는 影響

商道義의 墮落

工業所有權에 대한 侵害는 損害賠償등 民事的

責任追窮과 刑事處罰을 받게 되어 있으나 工業所有權이 觀念的인 無形의 權利이기 때문에 侵害에 대한 對備가 어렵고 侵害者로서도 侵害行爲에 대한 罪意識이 그다지 크지 않은 屬性이 있다.

그러나, 工業所有權의 侵害는 單純히 他人의 財產權에 대한 侵害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侵害行爲自體가 營利와 富를 目的으로 하는 經濟事犯의 一種이므로 市場秩序, 나아가 經濟秩序를 어지럽히는 큰 弊害를 낳는다.

工業所有權의 侵害行爲는 侵害者가 個人的인 營利를 위해 不正·模造物品을 生産·販賣하는 것이므로 自己만의 利益을 위해서 正當한 權利者 및 一般需要者의 不利益은 眼中에도 두지 않게 되어 商道義의 墮落을 가져온다.

消費者의 不信招來

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에 의하여 만들어진 物品은 새로운 創作에 의해 技術的, 經濟的, 實用的 價値가 높아진 物品으로서 工業所有權에 의해 保護를 받는다는 것은 需要者로 하여금 그 品質을 믿게 하여 주는 役割을 하는 것이며, 登錄商標의 경우에는 그것이 長期間에 걸쳐 商品에 使用됨에 따라 消費者의 信用이 蓄積되어진 結果 商標만을 보고도 品質을 믿고 安心하고 去來하게 된다. 그러나, 工業所有權을 侵害하여 生産販賣되는 物品은 그 品質이 粗惡한 경우가 많고 그러한 低質品을 購入, 使用한 消費者는 工業所有權을 侵害한 惡德業者를 怨望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生産者, 販賣者를 不信하고 나아가 工業所有權制度 내지 그 運營에 잘못이나 不正이 있는 것으로 誤解하게 될 것이다. 특히 商標權은 商標가 갖고 있는 出處表示機能 및 品質保證機能으로 因하여 商標權者뿐 아니라 消費者까지도 함께 保護를 받도록 하여 주는 것이므로 內國人商標나 外國人商標를 不問하고 가짜商標라는 것을 모르고 去來한 結果 商標만을 믿고 商品의 出處와 品質을 疑心하지 않았던 消費者가 가짜商品, 그것도 低質品임을 發見하게 되면 市場秩序의 基本인 去來者 相互間的 信賴關係가 損傷되어 生産者나 販賣者에 대한 消費者의 不信이 深化될 것이며 이는 結局 消費者뿐 아니라 生産者나 販賣商 모두의 不利

益으로도 波及될 것이다.

不公正去來

市場秩序의 基本은 去來者 相互間의 信賴關係가 維持되는데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信賴關係는 去來當事者間의 誠實度와 信用에 의하여 造成되고 市場秩序가 確立되어 있어야만 公正한 去來가 이루어질 수 있다.

工業所有權을 侵害한 物品이 市場에서 流通된다는 것은 그 商品의 出處나 品質에 대하여 去來關係의 一方當事者, 即 消費者를 欺瞞하는 것이므로 公正한 去來가 이루어질 수 없다.

더구나, 工業所有權의 取得을 위해서는 莫大

한 投資가 隨伴되어야 하며 工業所有權의 對象인 商品은 그러한 投資에 따른 適正利潤이 保障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하여, 그러한 負擔이 없는 第3者가 工業所有權을 侵害하여 物品을 生産 販賣하면서 不當하게 競爭을 誘發하는 경우에는 公正한 去來秩序의 維持가 어렵게 된다.

商標權을 侵害하는 경우에는 他人의 商標의 周知著名性에 便乘함으로써 一般 消費者들로 하여금 去來相對方을 엉뚱하게 錯覺하게 하고 商品의 品質을 誤信케 하여 不公正去來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去來關係의 不實은 結果的으로 商標權者에 대한 不信으로 發展됨으로써 商標權者까지도 莫大의 損害를 입게 될 것이다.



「특허·실용신안색인집」 발간에 따른 수요측정



본회는 지난 1948년부터 1978년까지의 특허·실용신안 색인집 발간에 이어 1979년부터 1983년 까지 5년간의 특허·실용신안 공고문을 출원인별, 분류별(IPC), 공고번호별로 색인집을 다음과 같이 발간코자 하오니 필요량을 기입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체 제 : 국배판

지 질 : 표지 레작크 250g, 내지 모조 80g

인 쇄 : 표지 단도 옵셋트, 내지 청타 8P 마스타

예상면수 : 1,620면 (1권당 540면)

1면당 수록건수 : 45건 기준

총수록건수 : 24, 188건

발간물종류 : 특허 실용신안공고번호별색인 (1979~1983)

 " 출원인별색인 (")

 " 분류별(IPC)색인(")

가 격 : 1권당 (3권) 70,000~80,000원

(단, 가격은 수요측정결과에 따라 다소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 락 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조사부

(13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중앙중묘빌딩 7층)